



▲ 양관식씨가 광고를 보고 97년 2월 대추나무종자를 분양받아 조성한 대추묘포장. 파종후 4,5개월이 지나도록 발아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생약협회 사무실에는 약초재배 상담을 위해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IMF 구조조정 바람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이 시골에 남아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 특용작물이나 재배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문의를 해오는 것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형편도 아니고 다른 농작물보다 특용작물의 경우 잘만 하면 훨씬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이점을 노린 일부 종묘분양업자들이 “특별한 재배기술 없이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로 마치 재배하기만 하면 당장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생약재배를 시작하려는 사

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이를 과대광고 내용만 믿고 재배를 시작했다가 투자비도 못건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다.

경기도 의정부시 양관식씨(40)의 경우도 그같은 예. 양씨는 지난 97년 2월 ○○영농에서 낸 신문광고를 보고 왕대추나무 종자 2구좌(20kg)를 분양받았다. 생산비를 제하고도 1구좌당 4,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내용만 믿고 시작한 일이다. 분양가는 2백평 식재용이라는 1구좌(10kg)당 60만원으로, 양씨는 종자값만 120만원(20kg)을 들여 4백평에 파종했다.

분양당시 ○○영농 대표의 설명으로는 자신들이 재

■ 피해현장 대추나무 종자분양 농가

계약내용 공증까지 받았지만 ‘재배잘못 탓’이라며 ‘오리발’

배기술 일체를 지도해준은 물론 만약 실패할 경우라도 인건비등 생산비에 투자된 일체의 경비를 보상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양씨는 이 같은 계약내용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재배지도는 고사하고 애초 분양업자들 말과는 달리 파종한 종자에서의 발아율은 겨우 1% 정도 수준. 거의 발아조차 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양씨가 입은 피해액은 종자값 120만원 외에도 땅 개간에 들어간 비용과 인건비등 생산비에 투자된 비용을 합해 총 1천만 원에 달한다.

“처음 계약내용대로 ○○ 영농측에 피해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배를 잘못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오리발을 내미는데는 공증받은 문서도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고 그때

심경을 털어놓는 양관식씨. 그래도 양씨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헤아렸다.

“○○영농측은 그때마다 대표자는 김아무개라는 등 일인물인데도 상호를 ○○ 영농에서 △△농산으로 또 XX영농으로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겨다니더군요” 귀찮아진 ○○영농측에서는 양씨에게 1년생 은행나무묘목 100주를 종자값 배상명목으로 공급했다. 주당 1만5천 원씩이라며 선집쓰듯 제공한 은행나무 묘목은 그러나 양씨가 다른 묘목상에 가서 알아본바에 의하면 주당 8백원, 비싸도 1천5백원을 안넘어 간다는 것. 지금와서는 배상받기를 모두 포기한 상태지만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씨는 “과대광고로 종자종묘를 분양하는 이를 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

고 근본적 대책안도 마련해 줄것”을 호소했다.

양관식씨의 경우는 그래도 피해규모가 적은편. 몇 천에서 몇억대의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한숨짓는 농가들이 허다하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이를 업자들에 의해 분양되는 종자 종묘값이 말도 않되는 고가인데다 품목 자체가 재배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험부담률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용작물에 관심을 갖고 재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농진청 작물시험장이나 농촌지도소, 믿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를 찾아가 상담한 뒤 품목을 결정하고 종자종묘 구입에도 반드시 발아시험을 거친 후 재배할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문정희〉

한약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협회입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해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제13조(수입 및 배정등) 제①항중 규격품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에 관해

[의견] 대한약공 우선배정 내용 삭제 요망

[사유] 69개 한약재 중에는 현행 29개 수급조절품목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음. 이를 대한약공에 우선 배정한다는 것은, 생산자보호 차원이라는 수급조절품목 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급조절품목을 배정받음으로서 발생되는 막대한 이권을 특정단체가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많은 폐단이 우려됨. 따라서 수입된 한약재에 대해서는 경매입찰제도를 도입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수익금은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생약농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제14조(수입요건 확인) 내용과 관련

[의견] 국내 생산되고 있는 약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국내산 재고량을 우선 수매하는 조건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생산자 단체인 생협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 신설 요망

[사유] 수입약재의 경우 ‘의수 협’ 추천시 일정율의 기금을 공제하고 있는 바 국내생산자보호 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급조절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생협’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일정율의 기금을 조성하여 국내생약의 생산진흥(하한가 계약재배, 생산지원금, 수출 주산단지 장려금 등)에 사용되도록 함이 타당.

제16조(품질검사) 수입한약재의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내용과 관련

[의견] 한약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불가

[사유] 현재 수입이 금지돼 있는 수급조절품목이라 하더라도 액기스와 식품으로 들어와 약재로 전용유통됨으로써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같은 상황

에서 더구나 수입한약재의 불합격 품에 대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한약유통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기준미달 불량수입약재의 ‘식품’ 등 타용도로의 국내유통 빌미를 제공하는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한 폐단이 우려됨.

제23조(규격품대상 한약) 제①항 중 규격품 대상한약을 한약(생약) 규격집에 실려있는 한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에 관해

[의견] 한약(생약) 규격집에 실려 있는 한약 중 국내생산약재를 제외한 수입약재에 한해서 이를 우선 규격품대상 한약재로 지정 바람직

[사유] 현행 36개 품목조차도 규격화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확대실시는 규격화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30~50% 원가상승’의 폐해를 전품목의 한약재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현실과의 괴리로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따라서 국내생약기반조성과 국산약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규격화제도는 전면 유보 내지 국내생

산약재는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수입약재에 한하여 품질강화 요건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23조(규격품대상 한약) 제4항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69개)에 관해

[의견] 69개 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18개)은 제외되어야 한다.

[사유]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69개 품목 중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18개 품목은 국내 생약물동량의 약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주생산품목으로 오·남용의 문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제조과정도 단순절단 포장 과정에 불과함. 이를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제조토록 한다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오인될 소지가 많음. 또 그렇게 될 경우 농림부가 총 298억원을 투자 전국 174개소에 설치한 생약가공 공장도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어, 이는 국가 재정적인 손실이라 여겨짐.